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0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전용기·서삼석·허 영

한병도 · 신정훈 · 양향자

이장섭 · 임호선 · 박용진

권칠승 · 김원이 · 임오경

전재수 · 유정주 의원

(1491)

#### 제안이유

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청소년, 여성 등 타 계층의 기본법제에 비해 사회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의 기회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년계층의 참여 확대와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으로 효과적인 청년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가.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(안 제7조). 나.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발전 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).

- 다.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,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,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(안 제25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,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 및 제27조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).
- 바. 이 법에 따른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함(안 제33조).

#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청년단체"란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.
- 6. "청년시설"이란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7조의 제목 "(청년의 날)"을 "(청년의 날과 청년주간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지정한다"를 "지정하고,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 주간으로 한다"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청년특별회의의 개최 등)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 별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  - ② 청년특별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, 청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.

- ③ 청년특별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 위원
- 2. 제2항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년
- 3.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에서 추천하는 청년
- 4. 국무총리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년
- 5.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·연령 별·지역별·시책별로 각각 전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
- ⑤ 청년특별회의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, 제4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5조(청년발전지표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책별로 청년 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청년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무총리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발전지표 또는 지방청년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발전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발전지표의 작성·보급 및 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방청년발전지표의 작성·보급 및 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5장 제목 "보칙"을 "청년단체의 지원 등"으로 하고, 제5장에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6조(청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청년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·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·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7조(청년시설의 지원 및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·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·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8조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청년친화도시"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보칙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조세감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5. "청년단체"란 청년의 참여
	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
	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
	단체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
	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6. "청년시설"이란 청년의 참여
	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
	여 제공되는 대통령령 또는
	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
	<u>다.</u>
제7조(청년의 날) 청년발전 및	제7조(청년의 날과 청년주간)
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	
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	
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<u>지</u>	<u>지정</u>
<u>정한다</u> .	하고,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
	<u>청년 주간으로 한다</u> .
<u>&lt;신 설&gt;</u>	제15조의2(청년특별회의의 개최
	등)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
	의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・추진
	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이 참여
	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1회

-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청년특별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, 청년 관련 토론회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수 있다.
- ③ 청년특별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 위원
- 2. 제2항에 따른 지역회의에서

   추천하는 청년
- 3.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에 서 추천하는 청년
- 4. 국무총리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년
- 5.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 · 연령별 · 지역별 · 시책별로 각각 전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⑤
   청년특별회의의 운영방법

   등
  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

   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청년발전지표 등) ①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책 별로 청년발전의 정도를 나타 내는 청년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무총리,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 항에 따른 청년발전지표 또는 지방청년발전지표에 따라 2년 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 체의 청년발전 달성 정도를 평 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년 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 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발전지표의 작성·보급 및 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방청년발전지표의 작성·보급 및 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

제5장 <u>보칙</u> <신 설> 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장 청년단체의 지원 등
제26조(청년단체에 대한 지원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청 년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 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·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 차·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7조(청년시설의 지원 및 설치

<신 설>

<신 설>

- 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·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·관리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.
- 제28조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이 조에서 "청년친화도시"라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  -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하여금 특별시·광역시·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 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<u><신 설></u> <u>제25조</u> ~ <u>제28조</u> (생 략)

<신 설>

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•절차, 지원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6장 보칙

<u>제29조</u> ~ <u>제32조</u> (현행 제25조 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)

제33조(조세감면)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 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할 수 있다.